

제303회 임시회  
2011. 9. 30.(금)

# 심 사 보 고 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 청 북 도 의 회  
행 정 문 화 위 원 회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1. 9. 30.(금)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외 6인

나. 발의일자 : 2011년 9월 9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9월 26일

(제30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 : 생략)

가. 제안이유

- 충북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 충북문화재단 재산으로서 기금의 성격과 충북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산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거법령의 추가
  - 「민법」 제32조 →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

○ 제4조 신설

- 제4조에 정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3. 검토보고 요지

#### (행정문화전문위원 : 손자용)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의 근거법령을 기존의 「민법」 제32조이던 것에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을 추가함으로써 충북문화재단이 비영리법인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제4조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충북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에 기준을 분명히 하고,

또한, 충북문화재단 기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던 것을 정관에 따르도록 하여 충북문화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조문을 보강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충북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명칭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무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
2.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 사업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자문 및 교육·연구 사업
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5.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네트워크 서비스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위탁 사업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토록 할 수 있다.

제8조(기본기금의 조성 등) 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북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도·시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3.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관리하며, 세부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출연금 등)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충북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제16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